

企業의 商標開發과 周知化

商標는 業디자인과 함께 商品의

VI. 商標의 周知化對策

商標의 周知化는 결국 商標가 指向해야 할 最終目標라 할 수 있다. 그러나 商標의 周知化에는 여려가지 말할 수 없는 事情, 고충과 努力,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난 費用이 所要되기 마련이다. 더욱이 消費者層에 따라서도 다르고 商品의 種類에 따라 다르므로一律的으로 말 할 수는 없다.

本欄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商標法上의 保護對策까지 포함한 商標의 周知化對策에 대해 論述해 보기로 한다.

1) 商標의 種類에 따른 周知化對策

① 生產者商標와 商業者商標

生產者商標(Maker Brand; Manufacturer Brand; National Brand)라고 하는 것은 「生產者(Maker)가 자기가 製造·生產하는 商品에 使用하기 위하여 設定하는 商標」이다. 통상 메이커 브랜드라고 일컬어지는 것으로,一般的으로 흔히 볼 수 있는 商標를 말하는 데 이 生產者商標의 周知化에는 특히 廣告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品質上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는 必須條件을前提로 하고 있다.

商業者商標(Dealer Brand; Distributor Brand)라 하는 것은 「生產者以外, 즉 (A) 輸出國의 輸出業者(Exporter), (B) 輸入國의 輸入業者(Importer), 또는 販賣業者(Dealer)、경우에 따라서는 (C) 輸出入國의 同一品種의 메이커 등이 設定하는 商標」라 할 수 있다.

그런데 生產者商標는 大企業은 말할 것도 없겠으나 中·小企業의 경우에도 按群의 品質保證이 可能하다는가 어떤 特定機能이나 新開發品을 生產·販賣하는 경우에는 대단히 有利하다. 소위 항간에서 말하는 「자기

의 商標」 또는 「固有商標」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한다. 이에 反하여 商業者商標는 딜러의 商標를 부착하여 生產者의 商品을 販賣·取扱하는 것으로 위에서 말한 것 중 (A)는 國內 大資本의 貿易商社 또는 百貨店 등이 國內의 中·小메이커로부터 商品을 購入하여 여기에 自社의 브랜드를 付着하여 國内外市場에 販賣하는 형태이고, (B)는 海外의 輸入商, 海外의 체인 스토어(Chain-Store), 百貨店, "Discount House", "Mail Order House" 등의 딜러(Dealer)가 自社의 브랜드를 生產者의 商品에 付着시켜 販賣하는 경우인데, 現在 우리나라商品輸出의相當數가 外國딜러의 브랜드에 依存하는 實情에 있다. 이 딜러의 商標는 결국 生產者的 實力如何에 따라 生產者의 商標가 살아나고 나아가 周知化되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는데, 生產者가 잘 알려져 있지 않고 資金力, 販賣力, 市場開拓力 등에 있어 도저히 힘을 쓸 수 없는 中·小企業의 경우에는 자기의 實力이 커지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 형태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C)는 國內外의 메이커가 自社의 生產能力에 限界가 있어 國內需要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自社의 製品과 同種의 것을 購入 또는 輸入하여 그 商品에 自社의 브랜드를 付着하는 형태인데, 의외로 그 차지하는 比重이 크다.

이 경우 브랜드의 所屬은 대개 大企業의 경우가 많으나, 이와 같이 商業者商標는 大資本의 輸出商社(例, (株)三星, (株)大宇, (株)雙龍 등), 外國의 輸入商社, 外國의 딜러, 國内外의 獨自의 販賣·輸出이 可能한 메이커 등이 그 大資金力, 販賣라인, 市場開拓力 등의 背景을 갖고 있으므로 中·小企業으로서는 여기에 便乘하여 自己의 商品을 販賣할 수 있으므로 有利함에 틀림없으나 그 대신 自己의 固有브랜드를 付着하지 않으므로 下請生產이라는 틀을 벗어나기 힘들므로 不況時나 狀況變動(競爭이 심한 경우 등)時에는 輸出·販賣

戰略(完)

꽃이자 얼굴



金 徹 洙
(辨 理 士)

價格, 서비스, 宣傳·廣告 등을 적극적이고도 자주적
으로 행할 수 없는 점이 缺點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自社固有의 商標開發 및 周知化를 위해서는 生產者, 즉 메이커의 경우에는 별 장애물 없이 어떻게 하든 自社의 브랜드를 키우도록 치밀하고도 綜合的인 對策을 세워야 할 것이고, 딜러의 브랜드에 의존해야 하는企業의 경우라도 최소한 國內에서는 自社의 브랜드를 별도로(가급적이면 商號商標로 구준히) 開發하고 周知化시키도록 努力해야 할 것이다.

다만 生產者商標의 경우 海外市場에 있어서의 브랜드의 周知化의 경우에는 莫大한 廣告費가 所要되므로 中·小企業의 경우에는 적합치 않은 點이 있으나例外적으로 單一品種이나 特定品을 輸出하는 경우에는 一般大眾이 消費者가 아닌限 비교적 廣告도 쉽고 廣告費도 적게 드므로 역시 自社브랜드의 認識·周知化에 努力해야 할 것이다. 물론 메이커의 直輸出의 경우에는 海外支店網이 충실히 綜合商社 등에 의뢰하여 生產者商標의 브랜드 周知化를 도모할 수 있다.

② 個別商標·綜合商標

個別商標(Individual Brand)라 함은 「메이커 또는 販賣業者가 어느 特定商品에만 設定·使用하는 商標」로서 한 마디로 말해 商品마다 서로 다른 商標를 附着使用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주로 라이프·싸이클(Life-Cycle)이 짧은 경향이 있는 食品(菓子類 등), 藥品, 玩具 등에 使用하고 流行性이 강한 化粧品, 衣類等에 適合하다. 이 경우에는 長期的인 周知化對策이 아닌 短期의인 周知化對策을 세워야 한다. 말하자면 大企業과 같이 資金力의 뒷받침이 충분하거나 中·小企業이라도 自信있고 特別히 浮刻시키고자 하는 브랜드 政策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品質의 保證과 더불어 T·V 廣告 등의 視·聽·覺 效果를 가진 매스컴을 利用하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 할 것이다.

論壇解說

目次

- I. 머리말
- II. 商標開發의 重要性
- III. 世界的 商標의 分析
- IV. 우리말 商標의 開發 可能性
- V. 商標의 選定條件
- VI. 商標의 周知化 對策
- VII. 맷는 말
(고딕은 이번號, 폰조는 지난號)

한편 綜合商標(Family Brand; Blanket Brand)란 것은 同一메이커 또는 同一 판매업자에 의해 生산되거나 판매되는 多數의 品目에 共通의 設定하는 商標로서 (例) (株) 金星社의 GOLD STAR, (株) 大宇의 심불마크 등) 특히 重化學工業製品이나 電氣·電子製品 등과 같이 技術集約的 商品인 경우에 특히 적합하다. 이것은 결국企業의 이미지를 浮刻시켜야만 그 効果가 큰 것으로 말하자면企業 P·R의 代表적인 P·R 方法인 自企業의 브랜드廣告에 대단히 중요하다.

다시 말해 海外로 進出하고자 하는企業은 특히 그 기업이 大企業인 경우에는 個別商標政策을 쓴다는 것이 이미지와 힘의 分散을 뜻하므로 綜合商標로 一貫해서企業의 이미지 提高에 總力を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別個의 商標의 種類로서 統一商標(Unified Brand: Common Brand) 즉, 共同商標을 看過할수 없다. 이것은 한마디로 同業多數메이커나 그 메이커들이組織한 組合 등의 團體가 共同으로 設定하여 出處表示를 強調한 商標로서 주로 零細한 小規模의 메이커들(例컨대 磁器·細工品類, 日用雜貨類, 玩具類 등에 많음)에 適合한 商標이며, 新開發品(共同開發) 등에 도適合하다.

後者の 代表적인 例를 들어보자면 東洋메이온과 帝人이 共同으로 設定한 테트론(Tetron)과 같은 商標를 들 수 있다.

統一商標의 경우에는 主目的이 費用節減과 出處表示의 強化, 기타 業務 및 危險의 分擔등에 그目的이 있어 특히 中·小企業의 海外進出에는 그러한 統一商標에 依한 進出이 바람직하다. 다만 統一商標의 경우에

는 個個에 이커의 均一한 品質의 保障과 管理 및 相互協調가 前提되어야 成功할 수 있다.

2) 商標自體의 宣傳廣告 및 管理對策

소비자들, 特히 海外消費者들에 대한 商標의 宣傳廣告에는 例컨테 文字商標만을 商標로 選定해서는 안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國內需要者들에게는 發音, 즉 稱號만으로도 충분히 出處表示를 認識할 수 있으나 눈(眼)에 의한 認識은 懶에 깊이 곤 傳達되면서 懶를 刺戟하기 때문에 특히 海外에서의 輸出廣告일수록 稱號可能한 소위 文字商標에다가 눈으로 보는 圖形商標를 附加하는 것이 輝선 効果의이며,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면 잘 조화된 디자인(Design)이 附加되므로써 綜合의이고 立體的으로 需要者들의 視聽覺에 보다 効果的으로 呼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우기 輸出廣告의 경우에는, 國內廣告와 달리 言語, 風俗, 慣習, 嗜好, 思想, 地理, 教育의 程度등이 다르므로, 相對國別로 廣告의 言語, 繪畫, 圖式, 圖表, 韻響, 色彩 등을 選擇·決定하여야 한다. 물론 이에는 相對國 國民의 生活特性, 生活環境, 터부시하는 對象, 情緒, 宗教 등을 고려하여 輸出廣告로서의 商標廣告에 차질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그러기 위한 海外수요자로 부터의 意見, 專門家들로부터의 協調 또한 必要하지 않을 수 없다.

3) 商標의 宣傳廣告 및 管理對策

商標의 宣傳廣告는 바로 그 企業의 宣傳廣告와一致하고, 어떤 意미에서는 商標의 宣傳廣告政策이 바로 企業의 P·R 政策의 核心이고 大部分이거나 바로 그 自體라 할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많은 企業들, 심지어는 一部 大企業들조차 이 點에 등한히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商標의 宣傳廣告가 그 企業의 經營戰略과 直結되고 있음을 認識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商標의 宣傳廣告手段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특히 사람의 귀와 눈 및 머리를 한꺼번에 작용시키는 텔레비전(TV) 광고야 말로 놀랄만한 廣告手段임에 틀림없다. 물론 新聞·雜誌·立看板·傳單과 各種 競技場의 현수막·廣告板 등에 의한 企業廣告도 무시할 수 없으나 短時間內에 需要者들의 懶裡에 깊숙히 파고 들어가서 日常生活의 妥當한 方便에까지 侵透할 수 있는 廣告手段으로서는 TV 광고가 단연 獨步의이다.

그런데 商標를 主로하는 企業廣告에 뛰따라야 할 前

提條件으로서는

Ⓐ 過多費用을 고려해야 하므로 특히 짧은 製品 Cycle로 短時間內에 自己商品을 認識시키고 流行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商品의 商標廣告에는 T.V 광고수단이 適合하나, 費用의 뒷받침이 없거나 廣告에 長時間이 要求되는 경우에는 企業이미지 P·R이 아닌 個別商標의 宣傳廣告일수록 TV 광고는 適合치 않고 또한 특히 中·요즘목의 경우나 침볼마크, 하우스마크의 광고시에는 TV 광고의 수단에도 費用의 過多支出을 각오해야 한다.

Ⓑ 需要者層이 一般大衆인 경우에 특히 TV 등 시청각에 의한 광고수단이 適合하나 그렇지 않고 消費量 또는 需要가 적은 경우에는 適合치 않다.

Ⓒ 企業의 이미지·업 廣告가 되는 경우나, 例컨테 企業의 比重이 尖端技術製品이나 重化學製品 등 技術要素가 큰 比重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新製品開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서, 企業이미지 廣告가 必要하기 때문에 보다比重있고 침잖으며 權威있는 新聞廣告, 實績廣告, 특히 新聞 등의 매스컴報道, 外國으로의 進出, 對外評判(특히 소비자협회, 공업진흥청 등으로 부터의 평판 및 海外의 매스컴, 第3機關으로서의 公認機關으로 부터의 評判), 國內外品質 또는 規格公認機關(例컨테 KS, UL, API, ASTM, JIS, AWWA, DIN, BS 등의 규격협회나 기관)으로 부터의 認定 등에 따른 廣告 등이 一部라도 아울러 뛰따라야 할 것이다.

Ⓓ TV廣告의 경우에는 視聽覺效果를 隨伴하기 때문에 특히 業種마다 明朗性, 單純明白性, 美的感覺, 健康性, 特別顯著性, 품위(稟位) 등을 고려하여 廣告할 商標를 選擇하고 廣告해야 한다. 예컨대, 重化學工業商品은 信賴性있는 무거운 무게의 廣告가 필요하고 技術優位를 強調하는 廣告나 新製品·新技術廣告에 치중해야 할 것이며, 化粧品廣告의 경우에는 美的·藝術的의이고도 觸感의 이미지를 심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 가급적이면 디자인 즉, 意匠의 要素가 商標廣告에 加味되어야 할 것이다.

Ⓔ 商標의 宣傳廣告에는 반드시라고 해야 할 정도로 品質과 企業의 이미지·업(Image-up)이 뒷받침하여야 한다. 廣告는 그럴듯 한데, 品質이 粗惡하다든가, 아프터서비스(After-service)가 잘 안되고 비싸기만 하다든가 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곧 의심하거나 심증나게 되고 敬遠觀賞하기 쉽다. 따라서 商標의 廣告=商品廣告이므로 商標의 廣告에는 그에 걸맞게,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品質의 向上에 全力を 投入해야 하며 最

高品质이라는 것은品質保證(最高品質이란 개념보다는均一한品質과 어느下限品質以上의確率이 가급적 소위 36~99.7%以上 되는 것을 말한다)에다 새로운機能(發明 또는 考案力의 加味)이 플러스되고 最高의 디자인이 결들여진商品이라고 풀이하여,品質保證+새로운機能追加+最高의 디자인으로 구성된適正價格의商品이市場에 나을 수 있도록死力を 다하지 않으면 물론 경쟁상대자와의相對性에 의해 다르겠지만前述한宣傳廣告效果는 유지되지 못하거나半減 내지消滅될 염려가 있다는 점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⑤ 商標管理가 뒤따라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가끔企業主를 비롯한責任者들의認識不足 및擔當者들의知識不足으로商標를登錄하기도 전에별안간 어떤商標를멋대로選定한 뒤 심지어數億원을들여TV,新聞,雑誌등에廣告한 후,나중에그商標가他社의先登錄商標등의存在로登錄拒絕되는등의심각한사태가벌어지는일이적지않음을보게된다. 그토록많은費用과時間과精力을기울여브랜드의이미지를世人의시청각에심어周知化시켜놓고辦理士等專門家の意見을듣지않거나經費節約,其他理由로商標management에등한해했다가엄청난문제를일으키는일이公開되지않아서그렇지非一非再한것이現實이다.

물론商標management가잘못되어競爭相對會社로부터周知에의便乘,모처럼이미지·업하려는商標를相對方이商標稀釋化政策을써서그effort을끌어내린다는가할경우에대비하여특히이미지·업하려는商標에對해서는徹底한防禦手段을강구하여보호울타리를뻥뚫려쳐야할것이다.

뿐만아니라모처럼만들어놓은商標權의保護를위하여自救策을強化할일이다.

現代自動車(株)등海外進出企業들의경우,南美등現地國의個人 또는會社들이自國에現代HYUNDAI라는商標를先登錄시켜놓고韓國의企業들이進出하자,곧이어商標使用禁止등의法的紛爭問題로現地에의進出에制動이걸리는일도商標保護에대한認識不足내지경험부족에따른것이다.

日本에서도東京의中心街銀座에位置한ダイマaru(大丸)百貨店,이세탄(伊勢丹)百貨店이東南亞에서現地의百貨店등체인·流通業體들때문에골머리를앓고있다고하는데東南亞現地百貨店등一部流通業體가버젓이自國에서大丸나伊勢丹을先登錄하여놓고營業을한다고하며,심지어는百貨店이름마저許諾도없이그대로使用하고있다고한다.물론계속

法的紛爭問題로飛火되어訴訟중에있다고한다.

國內에서도例外가아니어서(株)낫소가NASSAU CANNON商標을開發하여상표로출원했다가大法院에서日本의CANON에上告에서敗訴한일이있다.

또한요즈음에는농심의「새우깡」과(주)三養社의「새우스낵」間에商標싸움이벌어지고있는데,이와같이自社商標을防禦하고자하는싸움은熾烈하다.

대체적으로外國의一流企業들은自社의商標保護에敏惑한정도가아니라거의生命을걸정도여서약간만이라도類似하다싶으면相對方商標를登錄하지못하게하거나審判등의法的鬭爭을不辭하나國內의企業들은비록一流企業이라하더라도이상한정도로商標management및self-brand保護에둔탁하다고나할까.

아물든그重要性을認識하지못하는것같다.

이것은아마도國內企業들이國際舞臺에서본일이적거나아직도國內의環境이이제거우Industrial所有權이무엇인지눈을뜨게된段階밖에되지않은것이리라.

이상과같이商標의選定에서周知·著名에이르기까지의過程에는상당한經營上作戰과,努力,費用支出등이뒤따르겠지만,그만큼周知化에이르기까지의時間短縮,確實한周知性獲得,그리고周知化에따르는經濟的効果를생각한다면商標廣告의重要性은再言을要치않는다.

VII. 맷 는 말

企業의商標開發을뒷받침할現行商標法은世界어느나라의法制에못지않으나다만商標登錄에많은制限을加하고있어運用面에서자칫國內의商標登錄에위축감을줄염려가없지않다.

더우기國內商標의外國企業(個人포함)에의移轉등이實質적으로막혀있고通常使用權設定上의여의가지制限事項도있으나앞으로國內企業의商標開發을위해서는緩和되어야할것으로생각되어1987年7月이후의全面的開放에期待를걸어본다.現行商標法이制定된時期인1980年과1987년과의사이에우리나라는그동안엄청난經濟的·社會的變化를겪었다해도과언이아니다.

이제우리나라의企業들은本格적인海外進出을念頭에두면서世界의企業이라는視野에서商標開發및周知化作業에힘을기울여야될것이다.물론그에못지않게技術力強化와品質保證이뒷받침되어야할것임은말할나위도없다.〈88〉